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

1. 80톤 이상의 폭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 등의 물질로서 제1호에 따른 80톤 이상의 폭약으로 환산되는 수량의 물질

화약 및 화공품 등의 종류		폭약 1톤으로 환산되는 수량
가. 화약		2톤
나. 화공품(탄약을 포함한다)	1) 실탄 또는 공포탄	200만개
	2) 신관 또는 화관	5만개
	3) 총용뇌관	250만개
	4)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만개
	5) 신호뇌관	25만개
	6) 도폭선	50킬로미터
	7) 그 밖의 화공품	해당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다. 폭약·화약 및 화공품 외의 물질로서 폭발성을 가진 물질		2톤